

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제안연월일	2022. 10. .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 안	
번 호	

제안연월일 : 2022. 10. .

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1. 제안이유

현행 「구미시의회 회의규칙」 제47조제2항의 수정안 표결순서와 관련,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원안 범위를 명확히하여 보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본회의 심의·의결 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원안으로 본다는 규정 명시 (안 제47조제2항)

3. 개정규칙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83조

구미시의회 규칙 제 호

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본회의 심의·의결 시 원안이라 함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말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7조(수정안의 표결순서) ① (생 략)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. <후단 신설>	제47조(수정안의 표결순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, <u>본회의 심의·의결 시 원안이라 함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말한다.</u>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83조(회의규칙)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